



2025년 「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」 국내 온라인 판로지원 참여기업 모집공고

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는 도내 중소기업의 우수 제품을 더욱 많은 소비자에게 알리고, 유통 판로 확대 및 내수 판매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5년 「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」 국내 온라인 판로지원 신청기업을 모집하오니,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.

2025. 3월

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

1 지원사업 개요

- 사업명 : 2025년 「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」 국내 온라인 판로지원
- 사업기간 : '25. 3월 ~ 12월
- 사업내용 : 경기도 중소기업 제품의 온라인 판로지원
- 지원대상 :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(공고일 현재 기준)
- 지원규모 : 400개 기업 내외
- 지원기간 : 계약일로부터 ~ '25. 12. 31.
- 지원가능 제품 하단 '표' 참조

지원기업 신청가능 제품군	지원기업 신청불가 제품군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도내 중소기업이 국내에서 자체 생산한(기획·제조) 제품 - 도내 중소기업이 설립한 해외공장에서 생산한 제품 - 도내 중소기업이 국내에서 다른 업체에 위탁생산(OEM)한 제품 - 도내 중소기업이 해외기업에 위탁생산(OEM)한 제품 - 자사 제품과 타사 브랜드가 협업(콜라보레이션)하여 기획된 한정 제품 - 도내 농업인 또는 농업회사법인,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경영체의 제품 - 도내 중소기업이 해외기업에 위탁생산(OEM)한 제품 - 도내 중소기업이 산지 계약재배를 통해 생산한 제품 (도외 재배 시, 도내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만 지원 대상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류, 의약품, 기업형 의료기기, 산업재, 원부자재류, 부품, 소프트웨어 등 온라인 유통채널에서 판매 불가능한 제품 - 특허, 실용신안, 디자인보호, 상표, 저작권 등 법적 분쟁이 있는 제품 - 다른 상품을 표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품 - 시장에서 바로 유통이 어려운 시제품 - 공급사 및 제조사를 통해 구매하여 재판매하는 제품 - 해외직구 및 병행수입을 통해 구매하여 재판매하는 제품

2 세부 내용

1 선택 지원사업 (택1, 중복 선택 불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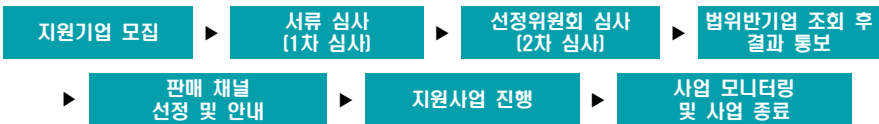
구분	지원형태	지원내용
선택1	상품 광고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공통) 온라인 채널 택 1 - 지원기업당 300만 원 한도 광고 지원 - 할인쿠폰 발행, 상품노출 배너, cpc광고 등 * 채널별 상이할 수 있음. 채널 담당자 통해 안내 예정
선택2	통합 기획전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공통) 온라인 채널 택 1 - 상·하반기 각 1회 기획전 추진 * 기획전 개설하여 메인 배너 등 활용한 상품 노출 및 판촉 지원 통해 소비자 유입 확대 등 제품 판매 경쟁력 강화 지원

※ 선정 이후 채널사 변경 불가

※ 채널별 재무제표 및 신용평가등급서 공고문 하단 첨부, 지원사업 신청 시 참고

3 사업 진행절차 및 심사 내용

1 사업 진행 절차



2 심사 절차 및 내용

- 1차 심사 : 서류심사 (지원대상 여부 확인 등)
- 2차 심사 : 외부 전문가 선정위원회를 통한 정성적 평가

※ 범위반사실 포함 심사위원 합계 평균 평가점수 70점 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고득점순으로 선정

평가항목	세부항목
지원 필요성(10)	- 판로지원의 필요성, 시급성 및 사업참여 의지
제품 경쟁력(30)	- 기업 제품의 시장 경쟁력 여부 - 평균적 고객 수요가 있는 제품에 대한 경쟁력 - 경쟁제품 대비 기술, 성능, 디자인, 가격 비교 우위 여부 - 해당 제품의 원재료 가공 수준 및 품질 완성도 - 품질 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 등 법령 준수 여부
기업 역량(10)	-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여부 - 조직 구성원의 전문성 및 인적 네트워크 보유 여부
기대 효과(10)	- 지원을 통한 발전 가능성, 매출 증대 가능성 - 지원을 통한 기업인증, 지식재산권, 투자유치 가능성
판매 적합도(40)	- 상품 이미지, 상세페이지 등 준비 여부
총 점(100)	- 법 위반 사실 확인시 총점의 20% 감점 적용
가산점 (각 2점/최대 4점)	- (공통) 착한 기업 선정 기업, 경기 가족 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, 주 4.5일 근무 도입 기업, 경기 임팩트 유니콘 기업 - (온라인) 여성 기업, 장애인 기업


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
1 신청방법

- 신청기간 : 2025. 3. 19.(수) ~ 2025. 4. 3.(목) 18:00 까지
 - * 접수기간 내 신청서 제출(온라인 제출)한 기업만 인정하며, 신청서 제출하지 못한 경우 추가 접수 불가
- 신청방법
 - ① 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 (www.kgcbbrand.com) 회원가입 및 로그인
 - ② 알림소식 → 사업공고 → 본 지원사업 공고 게시물 '신청하기' 클릭
 - ③ 사업참여 동의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확인
 - * 범위반사실(부존재) 여부 확약 동의
 - ④ 신청정보 입력 및 자료 업로드(업체정보 및 필수/선택 제출자료)
 - * 상품 등록(대표상품 1개 필수)

※ 채널별 재무제표 및 신용평가등급서 공고문 하단에 첨부하오니, 지원사업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② 필수 제출서류

구분	제출 서류	제출 서류 유의사항
작성 서류	[서식1] 지원사업 신청서	* 사업 공고문에 첨부된 제출서류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, 스캔하여 ZIP 파일로 압축하여 회사소개서 및 기타 자료란에 업로드
	[서식2] 개인정보 및 기업 경영 정보 수집 활용에 대한 안내 및 제공 동의서	
첨부 서류	[첨부서류] 사업자등록증 (또는 공장등록증)	* 첨부서류는 원본대조필, 유효기간은 접수기간 내 서류에 한함
	[첨부서류] 중소기업 확인서 / 국세, 지방세 납부 확인서	
	[첨부서류] 인증 및 확인서 등 증빙서류	* 서류 제출 시에만 가산점 부여 (3p 사업별 가산점 항목 참고) * 기업유형인증서 첨부란에 표기되지 않은 인증서는 다른 신청 파일과 함께 zip 파일로 압축하여 회사소개서 및 기타 자료란에 업로드
	[첨부서류] 회사소개서 및 상품소개서	* 제품은 샘플 대신 상품소개서(사진, 팸플릿 등)로 대체하여 회사소개서 및 기타자료란에 zip파일로 압축하여 업로드 (사진, 팸플릿 파일 제출 불가 시 우편 또는 택배로 실물 제출)
		<p>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납세증명서 지방세납부확인서 인증서 및 확인서</p>
선택	[서식3] 이의 및 구제신청서	* 법외반 해당기업의 경우 이의 및 구제 신청 시에만 제출
	회사소개서 및 기타자료	* 회사 및 상품 관련 자료 첨부 시 평가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음 * 용량 큰 경우 사업 담당자 이메일로 첨부 가능
샘플 발송	<p>제품 샘플 (우편 또는 택배 발송)</p> <p>우) 1348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89번길 20, 2동 7층 (삼평동, 판교테크노벨리 스타트업캠퍼스)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유통사업실 배지연 주임 (031-5171-5328)</p>	<p>* 제품 샘플 자료는 공고 마감일까지 제출처 주소로 도착해야 함 (대표상품 1개만 접수 가능)</p> <p>* 품평회 이후 샘플은 반환 불가하며 큰 부피, 고가제품은 사진, 팸플릿 등 자료로 대체</p> <p>* 냉장/냉동보관 식품의 경우 밀봉 패키지로 발송하거나 사진, 팸플릿으로 대체</p>

5 사업참여 유의사항

1 「경기도 법위반 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」 준수

- 조례 제6조에 따라, 법위반 사실 확인시 **평가 총점의 20% 감점** 적용
 - ① 조례 제2조제1호 공정, 노동, 환경, 납세 관련 11개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
가. (공정) ① 공정거래법, ② 하도급법, ③ 표시광고법
나. (노동) ④ 근로기준법, ⑤ 산업안전보건법
다. (환경) ⑥ 폐기물관리법, ⑦ 대기환경보전법, ⑧ 소음진동관리법, ⑨ 물환경보전법
라. (납세) ⑩ 국제기본법, ⑪ 지방세기본법
 - ② 위반사실 조회기간 : 사업 공모일(모집일) 기준 2년 이내
가. 법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행정처분 기준 처분, 과징금, 과태료
나. 법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고소, 고발건은 사실 확인시 제한기준 적용
 - ③ 사업참여 제한조건(변경)
(기존) 법위반 사실 확인시(1회이상) 공모사업 참여자격 제한
(변경) 법위반 사실 확인시(1회이상) 평가 총점의 20% 감점 적용
가. 사업자 선정후 과거 법위반사실 확인시(법위반사실여부 확인서(서식2) 내용과 상이) 사업 취소·보조금 반환 및 3년간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
나. 사업자 선정후 신규 법위반시 사업부서별(사업별) 법위반일 기준 사업취소 등 제한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음
 - ④ 법위반사실 확인(변경)
(기존) 기업이 법위반 행정 처분기관에서 발급한 사실 확인서 제출
(변경) 사업부서에서 기업의 법위반사실 확인
가. (공정)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(법위반조회발급/법위반사실조회)
나. (노동) 기업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지청
다. (환경) 기업 소재지 관할 시·군
라. (납세) 국제 및 지방세 완납 증명
 - ⑤ 이의 및 구제신청(변경) : 법위반사실로 제한기준 적용사실이 통보된 날로부터 7일 이내 대상자는 소명내용이 포함된 이의신청서(서식9) 제출
(기존)
가. 사업자선정위원회(실국 또는 수탁기관)에서는 사업자 선정전 이의 및 구제신청서 검토후 (필요시 기업 출석 소명) 구제여부 결정 및 통보
나. 법위반 사실 조회기간 내 2회 이상 법위반시 소명기회 제외
(변경)
가. 사업자선정위원회 등(실국 또는 수탁기관)에서는 이의신청 기한 경과 후 14일 이내에 이의 및 구제신청서 검토 후(필요시 기업 출석 소명) 사업자 선정전 구제여부 결정 및 통보(기업의 권리구제, 행정절차 이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결정기한 연장 가능)
나. 삭제
 - ⑥ 제출서류 :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, 기업의 법위반 사실 여부 확인서

② 공정한 [공모 - 심사 - 선정] 추진

- 공개모집 및 외부심사위원 심사(평가)를 통한 공정한 지원기업 선정

③ 가점 제도 운영

- 평가표 가산점 항목 참조

④ 「지방재정법」,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, 「경기도 사무위탁조례」, 「경기도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」, 「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」, 협약서 등 관련 규정 준수하여 추진

☞ 제출 및 문의처

☞ 사업 주관부서 : 유통사업실

☞ 문의 신청·접수 문의 : 배지연 주임 (Tel. 031-5171-5328)

※ 담당자의 사정으로 유선 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

통화가 되지 않으셨을 경우, 이메일 jiyeun@kgcbrand.com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선정 업체 발표는 공고 마감 후 해당 사업공고에 게시할 예정입니다.

(내부 일정에 따라 선정 업체 발표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)